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2. 23.(목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22.(수) 12:00 이후 / 총 5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	과 장 곽희경 사무관 박성훈	044-202-7762 044-202-7786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"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"

- **'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, 지원금액 조정(5/7만원→3만원)**
- **'22.6월 지원금 지원 종료에 대비,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**

□ 정부는 **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**을 **6개월간 계속 지원**한다.

○ 이는 **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**과 **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** 등을 고려한 것으로 **지원 규모**는 **4,286억원**이다.

□ **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**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**기본방침은 유지**하되, **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**에 **초점**을 두었다.

❶ 지원 기간, 지원 수준,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.

○ (지원 기간) **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**은 **6개월간 한시**적으로 **지원하기로 결정**됨에 따라 **5월 근로분까지 지원**한다.

○ (지원 수준) **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** 및 **경기회복세**를 **고려**, 전 사업장 **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** 근로자 1인당 **월 3만원**을 **지원**한다.

*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(참고자료 참조)

○ (지원 대상)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**30인 미만 사업(주)**에 대해 **지원**하되, 예외적으로 **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**은 **규모에 상관없이 지원**하고,

- 55세 이상 **고령자**, **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지역** 사업주, **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 종사자**는 **300인 미만 사업(주)까지**, **장애인활동지원기관**은 **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**한다.

○ (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) 일자리안정자금 **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**하며,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**일용근로자,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**는 **6월 30일까지 신청**할 수 있다.

* '22.5.1.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

❷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.

○ (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)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**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**된다.

- 또한, **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** 해당 기간에 **일자리안정자금 지원**이 **배제된다.**

* 법인은 해당법인 전체, 개인사업장은 해당 대표자 전체사업장 지원 배제

○ (정기 지도점검 지속) **부정수급 등의 최소화**를 위해 **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**을 **1, 2분기 연 2회 실시**한다.

○ (변경내역 연중 신고)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**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, 근로시간** 등이 **변경**되는 경우에는 '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'로 반드시 **변경신고**를 해야 한다.

-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·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.

□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**75만개 사업장(315만명 노동자)에**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**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**했다.

○ **규모별**로는 **5인 미만 74.8%, 5~9인 15.6%**, 10~29인 8.1% 순으로 지원하여 **10인 미만 영세 사업장**(90.4%)**에 집중적으로 지원**했고,

○ **업종별**로는 **도소매업 25.1%, 숙박음식업 18.8%, 제조업 14.5%**, 보건·사회복지업 7.9% **순으로 지원**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**주로 지원**했다.

○ 또한,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**노동비용 부담 경감**에 **도움**이 **되었다**는 **응답**이 **76.6%*로 영세 사업주**의 **경영 부담 완화**에 **기여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'21.9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

□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**30인 미만** 사업장의 **고용보험 피보험자**가 11월 말 기준으로 **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*(4.1%) 증가**했고,

* 전년 동기 대비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:
('19.11월) 223천명(+3.8%) → ('20.11월) 108천명(+1.8%) → ('21.11월) 255천명(+4.1%)

○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**근속기간은 '17년 3.9년**에서 **'20년 4.6년**으로 **증가**했으며, **저임금 근로자**의 **소득증대** 및 **임금 격차 해소**에도 **기여**했다.

* <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>
- **근속기간**(30인 미만): **('17년) 3.9년 → ('18년) 4.1년 → ('19년) 4.4년 → ('20년) 4.6년**
- **저임금근로자 비중**: **('17년) 22.3% ('18년) 19% ('19년) 17% ('20년) 16%**
- **5분위배율**(배): **('17년) 5.06 ('18년) 4.67 ('19년) 4.5 ('20년) 4.35**
- **최저임금 미만율**: **('17년) 6.1% → ('18년) 5.1% → ('19년) 4.8% → ('20년) 4.4%**

안정자금 수혜 사례

- ㅇㅇ식품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**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감소**로 **위기**를 **극복하고 고용을 유지**할 수 있는 **여력**을 **확보**하여 직원들을 **4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원동력**이 됨(지원인원 2명)
- 고시ㅇㅇ는 출판사 창업 후 **직원 채용과 프리랜서 계약을 고민**하던 중 **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되어** 전문 디자이너, 영상편집자 등 **정규직 5명을 채용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업 확장 및 고용 창출의 계기가 됨**(지원인원 5명)
- 드로ㅇㅇ은 지원받은 **일자리안정자금**을 **매니저 급여 인상**(최저임금→최저임금 120%)**에 사용**하는 등 직원과 혜택을 공유하여 **직원 및 고객의 만족도**를 **높이고, 매출이 향상되는 계기가 됨**(지원인원 1명)

□ **김영중 고용정책실장**은 "최근 4년 동안 **일자리안정자금**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**영세 사업주 부담**을 **완화**하고 **노동자 고용유지**에 큰 **역할**을 해 왔다."라면서,

○ "내년 상반기에도 **코로나19 여파**로 **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**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, **집행 및 사후관리**를 **철저**히 하는 등 **사업**이 **잘 마무리**될 수 있도록 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성훈 사무관(☎044-202-7786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

<1> 지원 대상

○ **(원칙)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**

▹ **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**
①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) 경비원·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무관 지원
② 55세 이상 고령자,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, 사회적 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
③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

☞ **(지원 제외)**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3억원 초과, 개인은 "사업소득", 법인은 "당기순이익" 기준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

<2> 지원 요건

○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**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**

* 보수액: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+통상적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

○ **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**, 기존 근로자는 **임금 수준 저하 금지** 및 **고용유지 노력 의무**

* 단,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은 제외

<3> 지원 금액

○ 모든 사업장 근로자 **1인당 월 3만원 & 6개월 지원**

○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**근로시간(근로일) 구간별로 지원**

*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: 40시간 미만~30시간 이상 2.6만원, 30시간 미만~20시간 이상 2.2만원, 20시간 미만~10시간 이상 1.8만원, 10시간 미만 미지원

* 일용근로자 지원수준: 22일 이상 3만원, 19일 이상~21일 이하: 2.6만원, 15일 이상~18일 이하 2.2만원, 10일 이상~14일 이하 1.8만원

<4> 신청 및 지급

○ **(신청)** 근로복지공단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,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○ **(지급) 계좌로 직접 지급**(매월 15일)

참고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사례

사업장명	ㅇㅇ식품	업종	곡물 제분업	소재지	경기 부천시
상시근로자수	2명	안정자금 지원인원	2명		
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	■ **'12.4월**부터 **50대 부부**가 직원 2명과 함께 **도토리묵 제조 공장 시작** ■ 식당 및 영세 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, 원자재가 상승 등은 매출 부진으로 직결되었고, 직원 해고를 고민하던 중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됨				
안정자금 지원효과	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**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감소**로 **위기**를 **극복하고 고용을 유지**할 수 있는 **여력**을 **확보**하게 되었음 ■ 인건비 부담을 덜어 직원들을 **4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원동력**이 되었고, **직원들의 고용불안**이 **해소**되어 **소속감 및 만족도**가 **높아짐**				

사업장명	고시ㅇㅇ	업종	일반 서적 출판업	소재지	경기 군포시
상시근로자수	5명	안정자금 지원인원	5명		
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	■ 피아노를 치던 **30대 후반 여성**이 **'18년 3월 출판사 창업** ■ 국비로 지원되는 학원을 통해 디자인과 편집을 배워 혼자 꾸려나가다 한계에 부딪혀 **직원 채용과 프리랜서 계약을 고민**하던 중 **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되어** 전문 디자이너, 영상편집자 등을 **정규직으로 채용**				
안정자금 지원효과	■ '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종료를 우려했으나 '21년에도 지원이 계속되어 **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업 확장 및 고용 창출의 계기가 됨** - 1인 자영업자로 사업을 시작해, 창업 당시 목표로 했던 **어엿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발전** ■ 지원받은 **일자리안정자금**을 **직원 급여 인상, 수당 지급** 등에 **사용**하고, 유급휴가, 육아기 단축근무 등을 부여하는 등 **직원과 혜택**을 **공유**				

사업장명	드로ㅇㅇ	업종	일반음식점업	소재지	경기 화성시
상시근로자수	1명	안정자금 지원인원	1명		
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	■ 의류매장을 운영하다 **'19.5월**부터 아내와 함께 **물감놀이 키즈카페 창업** ■ 아내가 삼남매 육아를 병행해야 하고, 물감놀이 키즈카페 특성상 **매니저 채용**이 **절실**하였으나 **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서 채용을 망설이던 중 일자리안정자금** 수혜 대상이 됨을 **알게 됨**				
안정자금 지원효과	■ 일자리안정자금은 **구인자와 구직자의 희망급여 차이를 훌륭하게 메워줘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**이 되고, **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됨** ■ 지원받은 **일자리안정자금**을 **매니저 급여 인상**(최저임금→최저임금 120%)**에 사용**하여 **직원 및 고객의 만족도**를 **높이고, 매출이 향상되는 계기**가 됨				